

2026년도 문화유산위원회

제7차 건축문화유산분과 회의록

- ▣ 회의일시 : 2026. 7. 3.(금), 14:00
- ▣ 장 소 : 경북도청 회의실 254호(화랑실)
- ▣ 출석위원 : 김난아, 김동영, 김상택, 김찬영, 남상욱, 변숙현,
이우종, 임원현, 정명섭, 조승래, 최무현, 한기문,
(이상 12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목 차

【심의사항】

1	도지정문화유산 지정(승격)대상 선정심의	영천 신녕향교 대성전	(공개)
2	도지정문화유산 지정 대상 선정심의	포항 장기목장성	(공개)
3	도지정문화유산 (주변) 현상변경허가심의	청도 합천리 석조아미타여래입상 주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재심의)	(공개)
4	도지정문화유산 (주변) 현상변경허가심의	영천 청제 발굴조사	(공개)

【심의사항】

안건번호 건축-26-7-1

1. 영천 신령향교 대성전 도지정문화유산 지정(승격)대상 선정심의

가. 제안사항

영천시 신령면 소재 「영천 신령향교 대성전」에 대한 도지정문화유산(유형 문화유산) 지정(승격) 대상 선정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영천시 신령면 소재 「영천 신령향교 대성전」에 대한 도지정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 유형 문화유산) 지정(승격)대상 선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영천시장
- (2) 대상문화유산명 : 영천 신령향교 대성전
 - 소 재 지 : 영천시 신령면 화성리 525
 - 소 유 자 : ○ ○ ○ ○ ○ ○ ○ ○ ○ ○ ○ ○
 - 수 량 : 1동
 - 구조/형식/형태 : 목조/ 무고주 5량가/一자형/맞배

라. 검토의견

- 문화유산위원 ○○○, ○○○, ○○○
 - 도지정문화유산(유형문화유산) 지정(승격) 대상으로 선정할 만한 가치가 있음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도지정문화유산(유형문화유산) 지정(승격)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원안 가결 12명

2. 포항 장기목장성 도지정문화유산 지정 대상 선정심의

가. 제안사항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소재 「포항 장기목장성」에 대한 도지정문화유산(기념물) 지정 대상 선정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소재 「포항 장기목장성」에 대한 도지정문화유산(기념물) 지정 대상 선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포항시장
- (2) 대상문화유산명 : 포항 장기목장성
 - 소 재 지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놀테리 산103번지 일원
 - 소 유 자 : 포항시 외
 - 수 량 : 57,622m²
 - 구조/형식/형태 : 석축성

라. 검토의견

- 문화유산위원 ○○○, ○○○, 문화유산전문위원 ○○○
 - 지정 가치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으나, 정확한 축조 년대와 방법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근거와 자료의 제시가 필요한 바, 문화유산 지정에 앞서 추가적인 연구와 규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보류
 - 역사적 가치는 충분하나, 정밀 지표조사 및 고문헌 교차 검증을 통해 유적의 차별성과 지정가치를 충분히 보완한 후 재검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보류 12명

3. 청도 합천리 석조아미타여래입상 도지정문화유산(주변) 현상변경허가 심의

가. 제안사항

청도군 화양읍 소재 「청도 합천리 석조아미타여래입상」에 대한 도지정문화유산(주변) 현상변경허가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청도군 화양읍 소재 「청도 합천리 석조아미타여래입상」 주변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에 문화유산 주변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유산명 : 청도 합천리 석조아미타여래입상(유형문화유산)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청도군 화양읍 합천2길 94-34
 - 사업내용 : 주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 설치면적 : 3개동 290.7㎡(69.88㎡, 55.90㎡, 164.92㎡)
 - 최대높이 : 13.425m (8.612m, 8.577m, 13.425m)

라. 검토의견

- 당해 문화유산에서의 조망 및 이질적인 건축물 건축으로 주변조화 등 영향이 있으므로 문화유산위원회에서 논의 필요

마. 의결사항

- 부결
 - 당해 문화유산과 인접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문화유산 주변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부결 12명

4. 영천 청제 도지정문화유산(주변) 현상변경허가 심의

가. 제안사항

영천시 금호읍 소재 「영천 청제」에 대한 도지정문화유산(주변) 현상변경허가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영천시 금호읍 소재 「영천 청제」 발굴 조사가 문화유산 주변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영천시장
 - (2) 대상문화유산명 : 영천 청제(기념물)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437-1
 - 사업내용 : 영천 청제 발굴조사
 - 제방 성토 이력, 축조 연대 등의 파악을 위한 시추조사(5개소, 폐공처리)
- ※ 영천 청제 사적 지정(승격) 신청에 대한 국가유산청 보완

라. 검토의견

- 본 사업은 국가유산청의 보완을 위한 시추조사 건으로, 현재 국가유산청 보완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방 안전, 몽리 주민의 민원, 소요예산이 수반 되는 사항임. 따라서, 금번 시추조사의 규모(φ100mm)가 작아 일부 훼손의 여지는 있으나 친환경적 복구를 고려하면 위원회에서 한번 검토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시추조사 1개소 지정 시행 및 친환경 공법으로 폐공 처리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조건부가결 12명